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번 호	[○○]경찰서 [2026-○○○○○○]호
이의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의 자	[이름 또는 성명불상자]
죄 명	[죄명]
불송치결정	[○○]경찰서 사법경찰관 [2026. ○. ○.]자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등]) 결정

[설명] 사건번호와 결정일은 수사결과 통지서의 기재를 그대로 옮깁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서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 복사할 수 있으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피의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은 혐의사실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신 청 취 지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6. ○. ○.] 위 사건에 관하여 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오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 청 이 유

1. 이의신청의 요지

가.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6. ○. ○.] 위 사건에 관하여 한 불송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합니다)은, [피의자가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1) [이 사건 결정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결정은 ○○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요지 항에서 결론을 먼저 밝힙니다. 잘못이 하나이면 (1), (2)로 나누지 아니하고 한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2. 이 사건 결정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

가. 이 사건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 결정 제[○]면).

○ "[결정서 원문]"

○ "[결정서 원문]"

나. 이 사건 결정이 기재한 피의자의 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결정 제[○]면).

○ “[결정서 원문]”

다. 위와 같이 [○○]은 다툼이 없으므로, 결론이 달라진 것은 법률적 평가의 차이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인지 여부입니다.

[설명] 불송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 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제1항). 결정서의 문장을 글자 그대로 옮기고 면수를 붙여야 결정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과 결론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결정서에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3.에서 판단 누락으로 지적합니다.

3. 이 사건 결정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결정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은 “[결정서 원문]”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 결정 제[○]면).

나. 관련 법리

[해당 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재합니다.]

[설명] 이 사건 결정이 피의자의 변명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였으면, 고의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된다는 아래 판례를 인용합니다.

[판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결정이 인정한 [○○]은 [피의자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결정은 [피의자의 변명]만을 근거로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는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설명] 쟁점이 여럿이면 같은 3단(결정의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으로 항을 나누어

반복합니다. 결정이 판단하여야 할 요건이나 적용법조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라는 문장으로 항을 닫습니다.

4. 수사 요망 사항

이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님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의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까."

나.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에 [○○]을 사실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검사는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제4항). 고소인이 요청하였으나 결정서의 이유에 나타나지 아니한 수사 사항을 이 항에 기재합니다.

5. 결어

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는 ① [○○]한 잘못 및 ② [○○]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 [이 사건으로 이의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한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다. 이의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에 따른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등사를 거쳐 필요한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담당 검사님께 면담도 신청하겠습니다.

라.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등사를 허가하면서 붙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3항, 제6항).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리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3 제2항).

첨 부 서 류

1. 수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1. [고소장 사본(증거자료 포함)] 1부

1. [그 밖의 자료] 1부

[2026. ○. ○.]

위 이의신청인 [이름] (인)

[○○]경찰서장 귀중

위 서식은 변호사 한동하가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서식은 일반적인 양식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된 자료와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후의 형사 관련법의 동향과 새로운 판결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